

이천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소관부서 : 청년아동과

제정 2016·3·16 조례 제1215호
일부개정 2019·3·8 조례 제1469호
일부개정 2020·10·7 조례 제1632호
(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6·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일부개정 2025·8·8 조례 제226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천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7, 2025·8·8>

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청소년지원,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청소년수련관”이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정서함양을 위해 문화활동, 생활체육 활동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문화의집”이란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을 말한다.
4. “청소년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의 정신건강, 학습, 진로, 대인관계, 이성 등에 관한 고충을 상담하며, 청소년의 자아성장과 자기개발을 위하여 심리·정서적으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청소년쉼터”란 가출 등 위기청소년들이 가정·학업·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6. “교육협력지원센터”란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진학) 지도와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전담하는 교육관련 기구를 말한다.

7. “동요역사관”이란 아동·청소년들에게 동요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한국 동요 역사 소장품 전시 및 체험 등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명칭)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명칭은 이천시 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4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0·7, 2025·8·8>

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2. 청소년보호·복지에 관한 사업
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별표의 청소년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4.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
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8. 예산과 회계
9. 정관의 변경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제9조(임원 등) ① 재단에는 이사장·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9·3·8>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이사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단서신설 2020·10·7>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개정 2019·3·8>

제12조(비밀 준수)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 등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 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 ① 재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같다. <개정 2019·3·8>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7>

제15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고·검사·지도 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의 파견)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요청에 따라 근무하는 파견 공무원에게는 근무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한다.

②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이나 운영 등에 대하여 재 위탁할 수 없다.

제1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잔여 재산 중 시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시에 귀속한다.

제2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25>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8 조례 제14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면된 임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10·7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8·8 조례 제2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중전 별표 1에서 이동 및 개정 2025.8.8>

청소년 관련 시설(제6조제3호 관련)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명 칭	위 치
서희청소년센터	이천시 영창로 260(창전동)
청소년문화의 집	
명 칭	위 치
창전청소년센터	이천시 영창로163번길 28(창전동)
부발청소년센터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21
청미청소년센터	이천시 장호원읍 서동대로8965번길 57

<청소년 복지시설>

명 칭	위 치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나르샤)	이천시 영창로227번길 28, 111호(창전동)

<청소년 이용시설>

명 칭	위 치
이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천시 이섭대천로 1119, 1층(증일동)
이천시교육협력지원센터	이천시 경충대로2697번길 306 2층(관고동)
동요역사관	이천시 영창로 260, 1층(창전동)